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6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송기헌・이상헌・김승원

박 정・양경숙・소병훈

안규백 · 신정훈 · 최혜영

김남국 · 정청래 · 이광재

주철현 • 류호정 • 정일영

맹성규 · 양이원영 · 전혜숙

김민기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본인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,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.

이러한 현행제도에 따라,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하였고,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·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(2020. 8. 28. 2018헌마927).

한편, 「주민등록법」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가 지정한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 의 열람·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6항 및 제7항)을 두고 있음.

따라서, 「주민등록법」의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·교부 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·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·읍·면의 장 등의 열람·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·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4(가정폭력피해자등의 증명서 열람·교부 제한) ① 제14조제1항·제2항·제7항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(이하이 조에서 "가정폭력피해자"라 한다)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(이하이 조에서 "제한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시·읍·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직계혈족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(이하이 조에서 "가정폭력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그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이 조에서 "기록사항등"이라한다)의 열람·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열람·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 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기록사항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 지 못하게 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등은 본인의 기록사항등에 대한 제

2항에 따른 열람 • 교부의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의 절차와 방법, 제2항에 따른 서면통보의 절차와 방법, 제3항에 따른 해제신청의 절차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4조의4(가정폭력피해자등의 증명서 열람·교부 제한) ① 제14조제1항·제2항·제7항, 제 14조의2 및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(이하 이 조에서 "가정폭력피해자"라 한다)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(이하 이 조에서 "제한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시·읍·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직계혈족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가정폭력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제 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그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(이하 이 조에서 "기록사항등"
	이라 한다)의 열람·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.② 열람·교부기관의 장은 제1

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기록사항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등은 본인의 기록사항등에대한 제2항에 따른 열람·교부의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의 절차와 방법, 제2항에 따른 서 면통보의 절차와 방법, 제3항에 따른 해제신청의 절차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